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실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반시설기획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기반시설기획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노사협력담당관 및 안전보건팀”으로 하고,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안전보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안전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법무팀장) ① 본부장 밑에 법무팀장 1명을 둔다.

② 법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2. 훈령·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제7조제9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 포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16. 통상우편 경쟁분야(서적, 상품 안내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보험사업과·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보험사업과·보험증권운용과·보험대체투자과 및 보험상품개발팀”로 하고,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보험상품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보험상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2.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개정
3.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중 우정주사보 “5,066”을 “5,098”로, 우정서기 “7,333”을 “7,255”로, 우정서기보 “7,591”을 “7,63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별표3의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보건팀, 보험상품개발팀, 법무팀은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노사협력담당관, 보험개발심사과장 및 준법감시담당관이 각각 수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생략)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u>경영총괄담당관</u> · <u>재정기획담당관</u> · <u>기반시설기획담당관</u> · <u>홍보협력담당관</u> 및 <u>노사협력담당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기반시설기획담당관· <u>홍보협력담당관</u> · <u>노사협력담당관</u> 및 <u>안전보건팀</u> ----- <u>서기관</u> 으로, <u>안전보건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 <u>서기관</u> · <u>행정사무관</u> · <u>공업사무관</u> · <u>보건사무관</u> · <u>식품위생사무관</u> · <u>간호사무관</u> · <u>시설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또는 <u>방송통신사무관</u> 으로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⑦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산업안전 및 보건관리</u>	<삭제>
<신설>	⑧ <u>안전보건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경영기획실장</u> 을 보좌한다.
	1. <u>산업안전 및 보건관리</u>

<신설>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⑧ (생략)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의3(법무팀장) ① 본부장 밑에 법무팀장 1명을 둔다.

② 법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2. 훈령·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4. (현행과 같음)

15.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 포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통상우편 경쟁분야(서적, 상품 안내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사업단) ① (생 략)	제9조(보험사업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 · 보험위험관리과 · 보험개발심사과 · 보험사업과 · 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보험사업과 · 보험증권운용과 · 보험대체투자과 및 보험상품개발팀----- ----- 서기관으로, 보험상품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보급</u>	<u><삭 제></u>
14. 삭 제	
15. <u>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 · 개정</u>	<u><삭 제></u>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u>우체국보험 상품공시</u>	<u><삭 제></u>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⑨ 보험상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보급</u>
	<u>2.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 · 개정</u>
	<u>3. 우체국보험 상품공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2,929	32,929	
•	•	•	
•	•	•	
우정주사보	<u>5,066</u>	<u>5,098</u>	+32
우정서기	<u>7,333</u>	<u>7,255</u>	-78
우정서기보	<u>7,591</u>	<u>7,637</u>	+46
•	•	•	
•	•	•	